

## 10. 아미쿠스(가상) 복지관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부속 아미쿠스(가상)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복지관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재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준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7.1.차구수정)(2018.12.18.개정)(2020.2.6.차구수정)(2020.12.16.개정)(2021.6.22.개정)

제2조(적용시설) 이 규정은 다음 시설에 적용한다.

1.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부속 아미쿠스(가상) 복지관 (2018.12.18. 개정)(2021.6.22. 개정)

제3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및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정준수 의무) 복지관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복지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에 노력한다.

###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관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은 복지관을 대표하고 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본 복지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
2. 규정 제정 및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사항

### 제 3 장 재정 및 보고

제10조(재정) 본 복지관의 재정은 본교 지원금 및 사업수익금,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예·결산 및 사업보고)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복지관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 제 4 장 보 칙

제20조(세 칙) 관장은 복지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규정의 개폐)

①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도 본 규정 효력에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